

「서울소셜벤처허브」 2026년 ‘허브 멤버스’ 입주사 추가모집 공고

「서울소셜벤처허브」에서는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오피스 ‘허브 멤버스’ 입주사를 추가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예비)소셜벤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소셜벤처허브 센터장

1

모집개요

□ 모집개요

- 공 고 명 : 「2026년 허브 멤버스 입주사 추가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26년 9월 15일(화) ~ 2026년 9월 29일(화) 10:00까지
- 모집규모 : 2개사(1개 기업 당 1석)
- 허브 멤버스 개요
 - 협약 기간 : 2026. 10. 1.~2027. 5. 31.(8개월)
 - 멤버십 비용 : 월 3만원(3개월분 비용 일할 납부)
 - 입주 위치 :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4층 서울소셜벤처허브
- ※ 주소 이전 불가
- 허브 멤버스 주요 이용혜택

<주요 이용혜택>

- ▶ 전용 공유 오피스 이용
 - 이용시간 : 평일/주말05:01~ 23:59(01:00~05:00 출입/퇴실 불가)
- ▶ 최대 3회 1:1 밀착 멘토링 제공(법률, 인사, 행정, BM 등 총 9개 분야)
- ▶ 커피, 음료가 구비된 커피라운지 무상이용
- ▶ 초고속인터넷, 복합기 등 사무환경 제공
- ▶ 회의실, 교육장 등 내부시설 이용
- ▶ 프라이빗오피스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행사 참여 기회 제공
- ▶ 협약 종료 후 성과 상위 2개사 프라이빗오피스 입주 가산점 5점 부여(1년간)

□ 지원자격 : 다음 3개 중 1개에 해당할 경우 자격 충족

순번	분류	내용
1	예비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일 이후 6개월 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재창업이 아닌 새로운 업종의 창업을 준비하는자 - 협약일 이후 1년 이내 소셜벤처판별결과통지서 발급 계획인 자
2	기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창업 1년(12개월) 이하 서울시 소재 창업기업 ※ 창업일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등기일 ※ 서울시 소재 :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지점, 연구소 등의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
3	졸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서울소셜벤처허브 졸업 5년 이내 기업

□ 모집규모 : 2석(1개 기업당 최대 1석)

○ 선정기업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1~2순위

○ 예비기업 : 3~5순위 (예비순위 유효기간 : 발표일로부터 1개월)

□ 신청 제외대상

구 분	신청제외 사항
채무불이행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신청일까지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채납중인 자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신청 가능

미완/허위 정보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등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참여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협약일 기준 서울시 창업지원기관에 입주중인 경우

2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5일(화) ~ 2026년 9월 29일(화) 10:00까지
- 공고장소 : 허브 누리집 및 유관기관 누리집

□ 접수 및 제출

※ 접수 및 제출 중 하나라도 누락 시 지원 포기로 간주

- 접수 : 구글폼 접수(<https://forms.gle/uTz13LE6xYJ4oQWUA>)

○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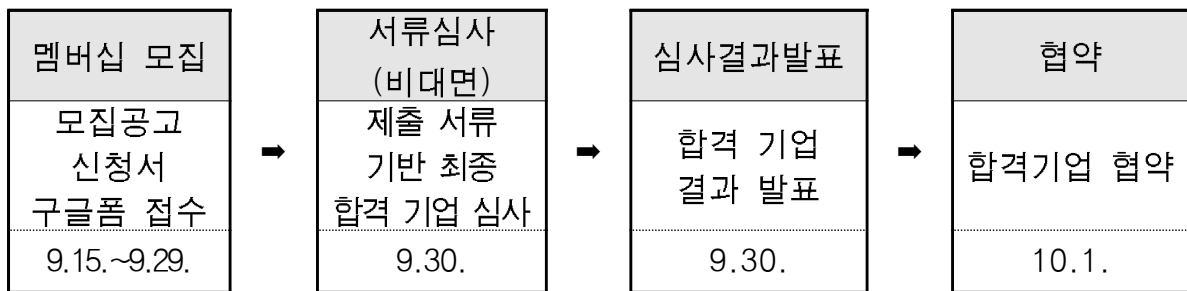
- 제출 서류
 - 회사 소개 자료(IR 덱 등) 1부
 - (기창업자)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enumber@svhc.or.kr) 제출
 - 제출 파일명 : 허브멤버스_기업명

□ 심사절차 및 일정

○ 심사방법

- 제출한 구글폼 및 서류로 내부 심사위원의 비대면 서류심사
- 심사위원 평가 점수 평균 35점 이상 기업(최고 점수 : 50점)
- 신청 기업의 제출 서류 근거바탕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 부여 후 심사위원 평균 점수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정

○ 선정절차



○ 심사표

평가항목	세부 내용	평가 기준
1. 이용 가능성	주당 이용계획	· 주 5일 이상 10점 · 주 3~4일 8점 · 주 1~2일 5점 · 월 1~3회 2점 · 불명확 0점
	실제 이용 예정 인원	· 2명 이상 정기 이용 5점 · 1명 정기 이용 4점 · 비정기 이용 1점 · 이용계획 없음 0점
	이용계획의 구체성	· 이용요일 · 시간등을 제시 5점 · 일부 제시 3점 · 불명확 0점
소 계		20점
2. 공간 이용 필요성	별도 사무공간 보유 여부	· 별도 사무공간 없음 10점 · 제한적 이용 7점 · 별도 공간 보유 3점 · 충분한 사무공간 보유 0점
소 계		10점
3. 기업 기본현황	사업모델의 구체성	· 차등점수부여 (최대 5점)
	향후 매출 · 고용 · 투자 등 성장 가능성	· 차등점수부여 (최대 5점)
소 계		10점
4. 허브 사업과의 적합성	소셜벤처와의 적합성	· 소셜벤처판별통지서 보유 5점 · 소셜벤처판별통지서 발급 계획 구체성 차등점수부여(최대 5점)
	멘토링 활용계획	· 차등점수부여 (최대 5점)
소 계		10점
합 계		50점

○ 차등지급 항목의 배점기준

평가기준	차등부여점수
사업내용·수익모델·소셜벤처적합성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5점
사업내용·수익모델·소셜벤처적합성 등이 일부 구체적으로 확인됨	3점
사업내용·수익모델·소셜벤처적합성 등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구체성이 낮음	1점
사업내용·수익모델·소셜벤처적합성 등의 확인이 어려움	0점

○ 선정결과 안내 : 2026년 9월 30일 중 서울소셜벤처허브 누리집 공지

※ 상기 일정은 서울소셜벤처허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허브 멤버스 안내

□ 운영 및 지원내용 안내

○ 운영 및 지원내용

- 이용료(임대료/관리비) :월 3만원

※ 3개월마다 3개월분(9만원) 일할납부

※ 협약기간 중도 퇴거 희망시 기납부 금액은 환불 불가, 다음 3개월 이용료 미납 방식으로 운영

- 최대 3회 1:1 밀착 멘토링 제공(법률, 인사, 행정, BM 등 총 9개 분야)

- 허브 사업 프로그램 중 네트워킹(타운홀미팅 등)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분류	내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년간 공유오피스 이용 협약 - 협약 종료 후 성과 상위 2개사는 향후 1년간 프라이빗오피스 입주 서류 평가 가산점 5점 부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좌석 당 책상, 의자, 사물함 각1개씩 제공 - 회의실, 라운지, OA실 지원 - 타운홀미팅 참여 지원 - 최대 3회 1:1 밀착 멘토링 제공(법률, 인사, 행정, BM 등 총 9개 분야)

□ 허브 멤버스 이용방법

- 이용시간 : 05:01 ~ 24:59(01:00~05:00 출입 절대 불가)
 - 이용대상 : 허브 멤버스 선정 기업의 등록 1인
 - 이용규칙
 - 허브 멤버스로 등록된 기업은 분기별 1회 성과 조사를 실시함
 - 허브 멤버스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 출입 가능하며, 멤버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멤버가 아닌 외부인 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외부인과 회의 시 회의실 사전예약 사용)
 - 다른 멤버의 이용을 방해하는 소음, 악취, 먼지, 폐기물 등이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은 진행할 수 없으며, 동일기업 민원 3회 발생시 멤버십을 제한 또한 탈퇴 시킬 수 있음
- ※ 세부 이용규칙은 [붙임 1] 『서울소셜벤처허브 허브 멤버스 이용규칙』 참고.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및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의 접수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멤버십 가입 신청 불인정
-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불가

□ 문의처 : enumber@svhc.or.kr / 02-2138-1697

허브 멤버스 이용규칙

- 서울소셜벤처허브(2026. 5. 27. 제정)

1. 멤버십

1) 멤버십 개요

- “서울소셜벤처허브 허브 멤버스”(이하 ‘허브 멤버스’)는 “서울소셜벤처허브 허브 멤버십”(이하 ‘허브 멤버십’)에 가입한 멤버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멤버는 서울소셜벤처허브의 공모 및 선정 절차에 의해 선정합니다.
- 2026년 허브 멤버스는 시범 운영 기간입니다.

2) 멤버십 협약

- 허브 멤버스 협약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3) 멤버십 이용료

- 허브 멤버십 이용료는 3개월씩 일할 고지되며, 3개월치 일할 납부합니다.

4) 멤버십 탈퇴 및 환불

- 허브 멤버십 가입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허브 멤버스 대상 모든 혜택이 종료됩니다.
- 가입 기간 종료 전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소셜벤처허브센터 담당자에 지정된 탈퇴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일 기준으로 허브 멤버스 대상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협약기간 중 중도탈퇴 시 기납부한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차기 납부 기간(다음 3개월)에 대한 이용료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멤버십_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6개월 내 창업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창업을 못했을 경우 3개월 유예기간이 있으며 유예기간 내에도 사업자등록을 안했을시 자동 협약 종료입니다.
- 예비창업자는 분기(3개월)마다 창업준비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멤버십_기창업자

- 기창업자 중 소셜벤처판별결과통지서 발급 전의 기업은 협약 후 3개월 이내로 소셜벤처판별결과통지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소셜벤처판별결과통지서 발급 전의 기업이 협약 이후 발급을 받았을시 성과로 인정됩니다.
- 기창업자는 분기(3개월)마다 허브의 실적(고용, 매출, 투자)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5) 멤버십_졸업기업

- 졸업기업은 분기(3개월)마다 허브의 실적(고용, 매출, 투자)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2. 공유 오피스 사용

1) 공유 오피스의 범위

- 공유 오피스는 서울소셜벤처허브가 소재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사옥 4층의 85㎡ 규모(약 26평)의 공간으로, 20석 규모의 사무공간과 탕비실, OA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출입 및 운영시간

- 허브 멤버스는 4층 출입이 가능한 모바일 출입카드를 제공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멤버 외 외부인의 출입은 불가하며, 외부인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협약 기업이 경고 1회를 받습니다.
- 허브 멤버스 운영시간은 오전 05시 01분 ~ 12시 59분입니다. 오전 01시~05시에는 입/출입이 불가하며, 해당 시간 입/출입 적발시 경고 1회를 받습니다.

3) 공간 및 물품의 사용

- 허브 멤버스는 책상과 의자, 사물함이 제공되며, 좌석 배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좌석 배치는 가나다순으로 지정됩니다.
- 멤버십 기업은 공유오피스로 주소 이전 및 등록이 불가합니다.
- OA실에 프린트, 복사, 팩스 등을 할 수 있는 복합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복사 용지는 개별적으로 지참하셔야 하며 토너를 절약하여 사용 바랍니다.
- 협약 종
- 탕비실에서 간단한 다과를 이용하실 수 있으나, 음식배달, 냄새가 나는 음식, 국물음식, 주류 등은 반입 불가하며, 사용 후 설거지 및 정리정돈, 분리수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급적 개인컵, 텀블러를 사용하고 일회용품의 사용과 폐기를 최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불가하며, 음식물 쓰레기 배출 적발 시 경고 1회를 받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건물 내 음주 적발 시 경고 1회를 받습니다.
- 협약 종료 이후 14일 이상 물품 미반출시 센터는 임의 폐기 조치를 취하며 폐기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시 해당 기업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쾌적한 사용을 위한 기본예절

- 허브 멤버스를 함께 사용하는 멤버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아래 기본적인 예절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오피스 내부에서 전화통화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필요 시 외부공간을 이

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음, 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은 불가하며, 미팅이나 회의가 필요한 경우 세미나실 또는 상담실을 사전 대여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경고

- 출석률은 출입카드를 통해 집계되며, 연속 1개월(30일) 이상 미출석시 경고 1회가 부여됩니다.
- 공유오피스의 원활한 운영 및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허브가 임의로 지정한 연속 90일 기준 기간 내 출석일수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동안 30일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경고 1회가 부여됩니다.
- 멤버가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다른 멤버에게 불편을 줄 경우, 서울소셜벤처 허브의 담당자는 해당 기업에게 경고조치할 수 있으며 3회 이상의 경고누적이나 기타 협약상의 중대한 사항을 어긴 경우 허브 멤버십 협약을 해지하고 추후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보안 및 안전관리

- 허브 멤버스의 보안 및 안전관리는 서울소셜벤처허브의 책임이나, 멤버의 부주의로 인한 귀중품의 도난, 분실 발생 시 배상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1) 기타

- 허브 멤버스가 소재한 건물 내부 및 외부의 모든 공간은 금연 공간입니다.
-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 이 사용규칙은 멤버 다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센터와 협의를 통해 개정과 보완이 가능합니다.